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3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김영배・이병진・조인철

박홍배 · 김태선 · 한병도

김태년 · 김영호 · 문금주

문정복 · 송기헌 · 천준호

이기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

임(제15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벌칙) 제50조제10항을 위반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 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료(科料)"를 "과료"로 하며, 같은 조제1호 중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를 "제9항(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3조의2(벌칙) 제50조제10항을 위반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
	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u>과료(科料)</u> 에 처한다.	과료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	1
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	
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	
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	
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	
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 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 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 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 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 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 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 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 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 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 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 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 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 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 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 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 13. (생 략)

22. (2. 2.
<u>제9항(자전</u>
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
다)까지
2. ~ 13. (현행과 같음)